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아동수당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아동수당법」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른 서비스이용권으로의 신청근거, 이용권 수급 도중 영아수당으로의 변경신청 시의 소급지원 규정 등 제도운영 관련사항 세부근거 개정 및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라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 처리 근거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(안 제10조의2 신설)

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,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수급할 때의 신청 근거

나.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(안 제10조의3 신설)

영아수당(이용권) → 영아수당(현금) 수급으로 변경 시 재신청 및 이용권 미이용으로 인한 영아수당 미지급기간에 대한 소급지원

다. 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첨부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”을 “첨부하여”로 하고,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주소지 관할 지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.

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추가지급 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) ① 아동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(이하 “영아수당”이라 한다.)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의 신청,

결정, 지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.

제1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영아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) ① 2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제10조의2에 따라 수급하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의 수급을 중지하고, 영아수당을 다시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아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영아수당 지급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이 지연되어 영아수당 미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) 「아동수당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<u>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4조(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 - - - - 첨부하 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 경우 주소지 관할 지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서류를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해야 한다.</u>

제10조(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) (생략) <u>제10조의2(추가지급 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) ① 아동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(이하 “영아수당”이라 한다.)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의 신청, 결정, 지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3(영아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) ① 2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제10조의2에 따라 수급하던</u>

	<u>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의 수급을 중지하고, 영아수당을 다시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아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영아수당 지급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의 신청이 지연되어 영아수당 미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561